대한노인회법안 (김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58

발의연월일: 2021. 4. 22.

발 의 자:김태호·정경희·이 용

안병길・金炳旭・권명호

이주환 • 윤영석 • 강기윤

정진석 · 김형동 · 박대출

홍준표 • 윤재옥 • 홍석준

조수진 • 곽상도 • 서병수

서일준 의원(19인)

제안이유

대한노인회는 전국 16개 시·도 연합회, 244개 시·군·구 지회, 해외지부 15개국 20개소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, 고령사회에 진입한우리 나라 노인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통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고는 있으나, 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음.

이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,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를 특수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대한노인회를 설립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 모하고,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,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,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·운용,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 적 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(제4조).
- 다.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, 6 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준회원으로 하며, 노인복지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특별회 원으로 함(안 제5조).
- 라. 대한노인회의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·부회장·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,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, 부회장과 선임이사는 회장이 임·면하며, 시·도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도록 함(안제12조).
- 마. 대한노인회의 각급회의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,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장을 겸하는 각급회의 임원과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(안 제14조).
- 바. 노인의 체력단련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시·도회 및 시·군·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두도록 함(안 제16조).

- 사. 대한노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수입,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).
- 아. 대한노인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사업, 대한노인회에 관한 교육·홍보 및 출판사업, 장의업·상조업·관광업 및 추모공원조성운영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함(안 제21조).

대한노인회법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대한노인회를 설립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,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법인격 및 설립) ① 대한노인회(이하 "대한노인회"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한다.
 - ② 대한노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제3조(정관) 대한노인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.
 - 1. 명칭
 - 2. 사무소의 소재지
 - 3. 사업에 관한 사항
 - 4. 회원의 권리 · 의무에 관한 사항
 - 5.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
 - 6.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

- 7. 자산 · 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
- 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9.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
- 10.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제4조(사업) 대한노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
 - 1.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
 - 2.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
 - 3.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· 운용
 - 4.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
 - 5.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촉진과 노인전용운동장조성 및 전 국노인체육대회 및 세계노인체육대회 개최
 - 6. 노인발전을 위한 각종 조사연구·교육훈련·학술진흥·홍보출판 ·국제교류 등의 업무
 - 7.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
 - 8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
 - 9. 노인을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노인대학 운영
 - 10. 노인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국노래자랑, 전국미전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개최
 - 11. 노인체력단련과 문화생활을 위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운

영

- 12. 노인복지정책을 비롯한 각종정책개발과 토론회 개최
- 13.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

제2장 조직

- 제5조(회원의 자격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를 포함한다.
 - 1. 정회원 :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
 - 2. 준회원 : 만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
 - 3. 특별회원 : 노인복지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 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
- 제6조(조직) ① 대한노인회에 중앙회, 시·도회, 시·군·구회 및 읍·면·동회를 두며,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거주자를 위하여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를 둘 수 있다. 다만, 경기도는 둘 이상의 시·도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대한노인회는 서울특별시에 중앙회를 두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·도회를 두며, 시·군·구(자치구

를 말한다)에 시·군·구회를 두고, 읍·면·동에 읍·면·동회를 둔다.

제3장 의결기관

- 제7조(총회) ① 총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, 시·도회장, 시·군·구회 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(定數)·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 - ④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제8조(총회의 소집)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.
 -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 -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소집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제9조(회의 및 의사)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정관의 변경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0조(의결사항의 승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

다.

- 1. 정관의 변경
- 2. 예산·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11조(이사회) ① 대한노인회에 이사회를 둔다.
 -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.
 - ③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
 - ④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.
 - 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⑥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장 집행기관

- 제12조(임원) ① 대한노인회의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·부회장·이사 및 감사를 둔다.
 - ②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, 부회장과 선임이사는 회장이

- 임·면하며, 시·도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 다만, 감사가 궐위 (關位)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궐위된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감사는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일의 전날까지 재임한다.
- ③ 회장은 대한노인회를 대표하고, 대한노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,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감사는 대한노인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(監査)한다.
- ⑥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,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면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.
- 제13조(임원의 수와 임기 등) ① 대한노인회의 중앙회에 두는 임원의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.
 - ② 대한노인회의 중앙회 외의 각급 회의 임원의 종류, 수, 선임 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.
- 제14조(실비 지급 등) 대한노인회의 각급회의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제16조에 따른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장을 겸하는 각급회의 임원과

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.

- 제15조(사무 부서) ① 대한노인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급회에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사무 부서, 직원의 정원 및 보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- 제16조(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) ① 노인의 체력단련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시·도회 및 시·군·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둔다.
 - ②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장 재정

- 제17조(재정) ① 대한노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수입, 그 밖의수입으로 충당한다.
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③ 개인,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.

- 제18조(국·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 노인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 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- 제19조(사업연도) 대한노인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20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① 대한노인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- 1.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 - 2.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 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
 -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장 보칙

제21조(수익사업) 대한노인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- 1.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사업
- 2. 대한노인회에 관한 교육・홍보 및 출판사업
- 3. 장의업 · 상조업 · 관광업 및 추모공원조성운영사업
- 4.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- 제22조(지도·감독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・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, 조사범위, 조사담당자,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 - ④ 제2항에 따른 출입·검사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행정조사기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.
- 제23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전국규모의 노 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대한노인회가 아니면 대한 노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24조(「민법」의 준용)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7장 벌칙

- 제25조(과태료)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대한노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률의 폐지)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.
제3조(대한노인회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(이하 "구법인"이라한다)는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한노인회(이하 "신법인"이라한다)가 그 모든 재산과 권리・의무를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

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,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업무, 권리·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
-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(公簿)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.
-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,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.
-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.
- ⑦ 신법인 설립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한노인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- 제4조(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)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법인이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.